2024년도 (재)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

의안 번호	2404

제출일자 : 2023. 11. 13.
제 출 자 : 달성군수

1. 제안 이유

○ 2024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○ 달성복지재단 운영비 출연: 6억 8,500만 원

-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달성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교부
- 모금 및 배분사업,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군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,
- 노인복지관, 국공립어린이집 등 52개 수탁시설 복지 종사자의 자질향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

3. 출연심의 요구서 : 따로 붙임

4.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: 따로 붙임

5. 출연기관 현황 : 따로 붙임

출연 심의요구서

<table>
<tr><td>출 연
대 상</td><td>○ 기관명 :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
○ 대 표 : 강성환(비영리 공익법인, 2008. 10. 15. 설립)
○ 일반현황
- 소 재 지 :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
- 기본재산 : 21억원(달성군 출연금, 이월금)
- 주요사업
· 시설운영: 노인복지관, 가족센터, 국공립어린이집 등 48개 수탁시설
· 모금사업: 기부 및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, 착한가게, 나눔 캠페인
· 배분사업: 지정 · 결연 후원, 저소득 가정 지원, 후원물품 등
· 기획사업: 홀로어르신 명절나기, 희망찾기 가족사랑 여행 지원 등</td></tr>
<tr><td>출 연
사업비</td><td>○ 출연 예정 금액: 6억 8,500만원
- 운영비: 6억 8,500만원(군비)
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
(단위: 백만 원)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구 분</th><th rowspan="2">사업기간</th><th rowspan="2">2023년
요구액</th><th rowspan="2">2024년
요구액</th><th colspan="5">재 원 별</th></tr>
<tr><th>계</th><th>국비</th><th>시비</th><th>군비</th><th>기타</th></tr>
<tr><td>인 건 비</td><td>2024.1.1.
~12.31.</td><td>540</td><td>495</td><td>495</td><td>-</td><td>-</td><td>495</td><td>-</td></tr>
<tr><td>기본경비</td><td>2024.1.1.
~12.31.</td><td>98</td><td>145</td><td>145</td><td>-</td><td>-</td><td>145</td><td>-</td></tr>
<tr><td>사 업 비</td><td>2024.1.1.
~12.31.</td><td>0</td><td>44</td><td>44</td><td>-</td><td>-</td><td>44</td><td>-</td></tr>
<tr><td>예 비 비</td><td>2024.1.1.
~12.31.</td><td>2</td><td>0</td><td>0</td><td>-</td><td>-</td><td>0</td><td>-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출 연
필요성</td><td>○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달성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교부</td></tr>
<tr><td>근거법령</td><td>○ 지방자치단체 출자 ·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- 제20조(재정 지원)
○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
○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제11조(출연금 교부)</td></tr>
</table>

사업부서 의 견 (총평)	○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, 군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하고 있음 ○ 모금 및 배분사업,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군민에게 내실 있는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,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다양화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, 노인복지관, 국공립어린이집 등 52개 수탁시설 복지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○ 복지정책과 부서 의견은 달성복지재단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, 설립 목적 수행을 위한 군 출연금 6억8,500만원 교부는 타당하다고 판단함.

사업부서 검토의견서

1.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의견

○ 2024년 출연금 6억 8,500만원 교부로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

- 2024년도 이월금(자부담) 예산 감소
- 달성복지재단 이사장 직무수행경비 반영
- 사업비 출연금 예산 일부 반영 편성

2.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

(단위: 백만 원)

구 분	2022년 결산액	2023년 예산액(최종) (A)	2024년 예산(안)			
			기 관 요구액(B)	부 서 검토액(C)	증 감 (C-B)	전년대비 증감액(C-A)
총 계	676	640	685	685	0	45
인 건 비	397	540	495	495	0	▲45
기본경비	201	98	145	145	0	47
행사홍보비	3	0	4	4	0	4
교육훈련비	22	0	41	41	0	41
수탁시설전출금	53	0	0	0	0	0
예 비 비	0	2	0	0	0	▲2

출연기관 현황

기 관 명	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	전화번호	053-617-9200
		홈페이지	www.dswelfare.kr
설립근거	법률 : 민법,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: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	
주요연혁	설립연도 : 2008. 10. 15.		

임 원	직책	성명	주요경력	임기
	대표이사 (비상임)	강성환	- 前 달성군 환경과 과장	2023. 1. 18.~2025. 1. 17.
	상임이사	김외식	- 現 달성군 교육복지국 국장	2023. 1. 18.~2025. 1. 17.
	비상임이사	구명숙	- 前 달성노인복지센터 대표	2023. 1. 18.~2025. 1. 17.
	비상임이사	윤영현	- 現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장	2023. 1. 18.~2025. 1. 17.
	비상임이사	이장희	- 前 이성철변호사 사무실 사무국장	2023. 1. 18.~2025. 1. 17.
	비상임이사	이학도	- 現 성화종합건설(주) 이사	2023. 1. 18.~2025. 1. 17.
	비상임이사	임규태	- 現 다사농협 사외이사	2023. 1. 18.~2025. 1. 17.
	비상임이사	전옥수	- 現 엠허브의원 총무 이사	2023. 1. 18.~2025. 1. 17.
	비상임이사	정우선	- 前 달성군장애인복지관 관장	2023. 1. 18.~2025. 1. 17.
	비상임이사	차한용	- 前 달성군 공무원 (현풍면장)	2023. 1. 18.~2025. 1. 17.
	비상임감사	서연희	- 現 세무사	2023. 1. 18.~2025. 1. 17.
	비상임감사	장명진	- 前 상인복지관 관장	2023. 1. 18.~2025. 1. 17.

주요기능
○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○ 복지자원 발굴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 ○ 복지 프로그램개발 사업 ○ 복지시설 간 협력 지원 ○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사업 ○ 복지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사업

최근 3년간 예산현황	연 도	2021년	2022년	2023년	재무현황 (2022. 12. 31. 기준)	자산	3,219백만원
	예산액	1,474 백만원	1,680 백만원	1,574 백만원		부채	5백만원
	지자체 지원액	676 백만원	622 백만원	640 백만원		자본	3,214백만원

참고 **상위 및 관계법령**

□「**민법**」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□「**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**」

제2조(적용 범위)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·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, 학술, 자선(慈善)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(이하 "공익법인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□「**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**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

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장학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설립 목적
2. 주요 업무와 사업
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「**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**」

제5조 (기본재산의 조성) 재단의 기본재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"달성군"이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제11조 (출연금 교부) 군수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